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공고 제2026-97호

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부고지서(독촉장) 공시송달 공고

일자리안정자금 환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수금 납부고지서(독촉장)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11. 5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

1. 건　명: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부고지서(독촉장)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　거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,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(공시송달 대상자 명단)
4. 공고기간: 2026. 11. 5. ~ 2026. 11. 19.(15일간)
5.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관리과 문윤미(Tel. 054-271-677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